

의안번호	제 661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330 회)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1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인적·기반재난,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 폐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안 제3조)
 -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 발령 등으로 구체화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49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6조)
 - 현행 실·국·본부 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역할 부여 등 신설(별표 3~7)
-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
- 현장상황관리관 임무 및 시·군 대책본부 지휘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제12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신설(안 제17조~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안 제19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을 신설(안 제21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 략(전부개정) ※현행조례 불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요약 발취)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청북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지원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 ② 시·군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군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 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구성·운영) 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재난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집 등) ① 재난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충청북도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정책기획관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국제통상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안전행정부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우리 도 '오창 신도시' 해당 9. 정부중요시설(도 청사) 사고	균형개발과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	10.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11.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12.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small>※필요시 안전총괄과 협조</small>
농림축산식품부	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	축산과 유기농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8. 전력 사고 19.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 <small>※필요시 차수방재과 협조</small>
보건복지부	20. 감염병 재난 21.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환경부	2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3.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6. 황사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	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창출과
국토교통부	28. 고속철도 사고 29.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0. 도로터널 사고 31.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2. 육상화물운송 사고 33. 항공기 사고 3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교통물류과 치수방재과 도로과 수질관리과 교통물류과 관광항공과 <small>※필요시 교통물류과 협조</small> 관광항공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금융위원회	3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정책과
문화재청	3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39. 산불 40. 산사태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소방방재청	41. 화재 42. 위험물 사고 4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4. 다중 이용건축물 대형사고(붕괴) 4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6. 지진 47. 화산 48. 낙뢰 49. 가뭄	소방본부 소방본부 안전총괄과 건축문화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지원관	안전행정국장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

-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호우·대설·태풍 등: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 30+a+β명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30+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9+a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a)	○ 재난상황관리반(3)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기상청, 충북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	
	상황보고서 작성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행정지원 (1+a)	○ 총무과(1+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1+a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a)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a)	
	긴급통신지원	○ 정보화담당관(1+a)	
	시 설 응 급 복 구	도로	○ 도로과(1+a)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a)
		축산	○ 축산과(1+a)
		하천	○ 치수방재과(1+a)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a), 건축문화과(1+a)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a)
		투자유치사업	○ 기업유치지원과(1+a)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a), 미래산업과(1+a)	
	재난수습홍보	○ 공보관(1+a)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안전총괄과(1+a), 치수방재과(1+a)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a)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a)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a)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a)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도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34+a+β명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34+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a)	○ 재난상황관리반(7+a)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기상청(1), 충북지방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a명) - 여름철: a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a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행정지원 (1+a)	○ 총무과(1+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1+a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a)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a)	
	긴급통신지원	○ 정보화담당관(1+a)	
	시설 응급 복구	도로	○ 도로과(1+a)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a)
		축산	○ 축산과(1+a)
		하천	○ 치수방재과(1+a)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a), 건축문화과(1+a)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a)
		투자유치사업	○ 기업유치지원과(1+a)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a), 미래산업과(1+a)	
	재난수습홍보	○ 홍보관(1+a)	
	물자관리및지원지원	○ 안전총괄과(1+a), 치수방재과(1+a)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a)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a)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a)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a)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 40+a+β명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40+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9+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9+a)	○ 재난상황관리반(9+a)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4) - 기상청(1), 충북지방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a명) - 여름철: a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a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a)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5+a)	○ 재난수습 주관부서(5)	
	행정지원 (1+a)	○ 총무과(1+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1+a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a)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a)	
	긴급통신지원	○ 정보화담당관(1+a)	
	시설 응급 복구	도로	○ 도로과(1+a)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a)
		축산	○ 축산과(1+a)
		하천	○ 치수방재과(1+a)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a), 건축문화과(1+a)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a)
		투자유치사업	○ 기업유치지원과(1+a)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a), 미래산업과(1+a)	
	재난수습홍보	○ 홍보관(1+a)	
	물자관리및지원지원	○ 안전총괄과(1+a), 치수방재과(1+a)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a)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a)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a)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a)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 가.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31+a+β명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31+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a)	○ 재난상황관리반(5+a)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보고서 작성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행정지원 (2+a)	○ 총무과(1+a), 재난수습 주관부서(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1+a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a)	
	긴급통신지원	○ 정보화담당관(1+a)	
	시설 응급 복구	도로	○ 도로과(1+a)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a)
		축산	○ 축산과(1+a)
		하천	○ 치수방재과(1+a)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a), 건축문화과(1+a)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a)
		투자유치사업	○ 기업유치지원과(1+a)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a), 미래산업과(1+a)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안전총괄과(1+a), 치수방재과(1+a)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a)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a)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a)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a)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a)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a)		
재난수습홍보	○ 공보관(1+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담당관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TV 방송 모니터링
	상황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재난안전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도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펌프장 가동, 가거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 인명피해 상황관리 ○ 재산피해 상황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비상근무 단계 결정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 화상회의 준비·운영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구 분	담 당 업 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시설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에너지 기능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수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수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수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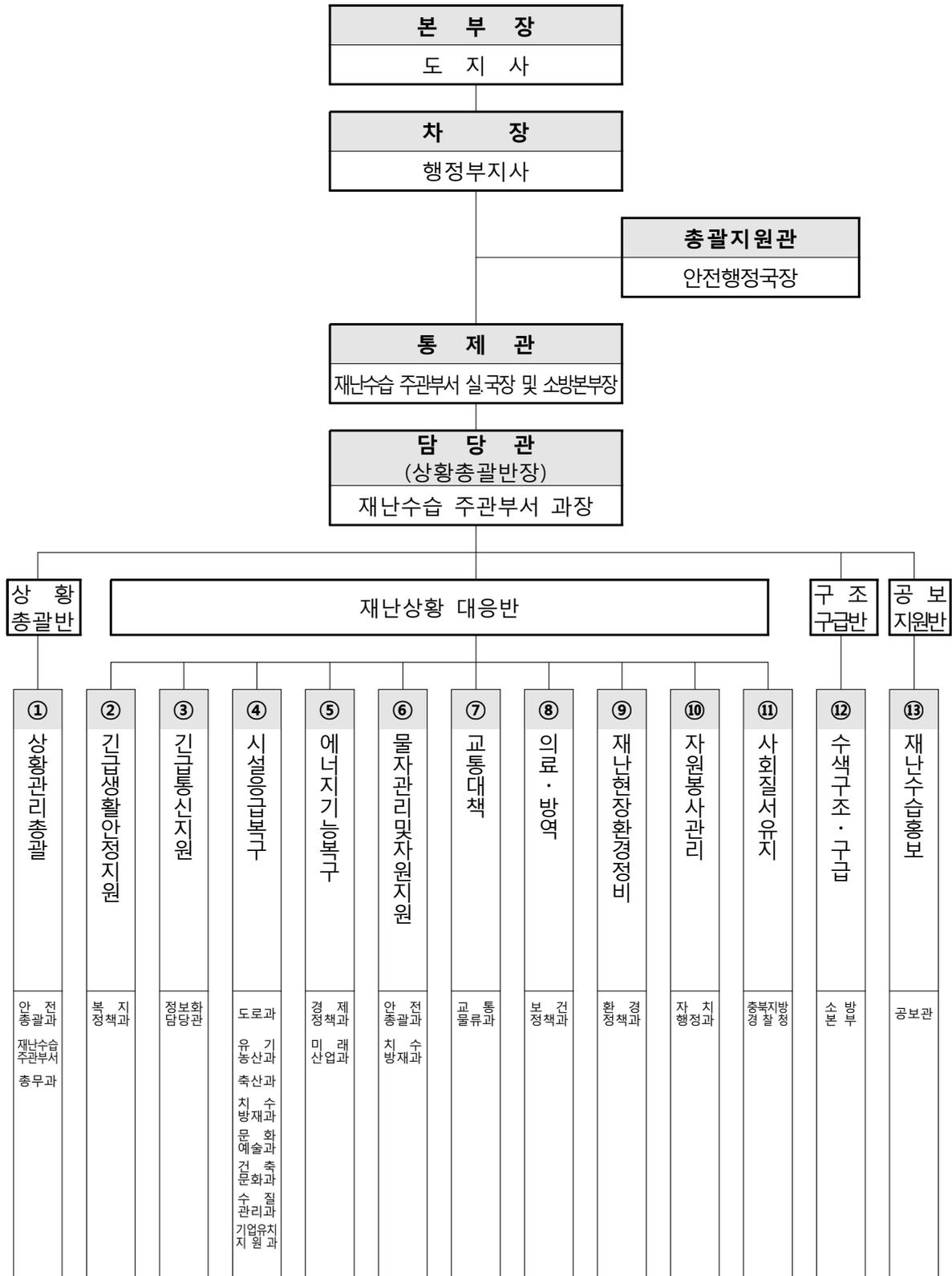
구 분	담 당 업 무
의료·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자원봉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사회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수색, 구조·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p>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p>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①재난상황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지원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TV방송 모니터링 	재난안전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국회·도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본부장 주재회의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상황 대응반	②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③긴급 통신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④시설 응급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⑤에너지 기능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⑥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⑦교통대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두절구간(도로, 수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⑧의료·방역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⑨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⑩자원봉사 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⑪사회질서 유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구 조 구급반	⑫수색, 구조·구급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공 보 지원반	⑬재난수습 홍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피해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재난으로 본부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법률상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법 제66조제3항) 	
	구 분	지 원 대 상
	① 사망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금
	② 주택	주거용 주택의 파손 침수 등
	③ 학자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④ 용자지원	농어업용 자금융자,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⑤ 세입자 보조	세입자 생계안정 지원
	⑥ 경감 및 납부유예	국세, 지방세 등 납부유예 및 경감
	⑦ 농업시설 복구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⑧ 공공시설 복구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복구비	
2.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19조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 시 부담률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에 따라 부담한다.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p>가. 사망자·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실종자: 1천만원 2) 부상자: 사망자·부상자 구호금의 50퍼센트 <p>나.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구호: 구호물품 셋트 지원 2) 장기구호: 주택이 전파된 경우 60일간, 주택이 반파된 경우 30일간 구호비 지원 3)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4) 세입자 보조: 세대당 입주보조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p>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p>※지원대상: 주택 및 시설물, 농림시설 및 농작물, 축사, 가축, 그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p>	
5.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p>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p>	
6. 그 밖의 사항	<p>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2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재난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제20조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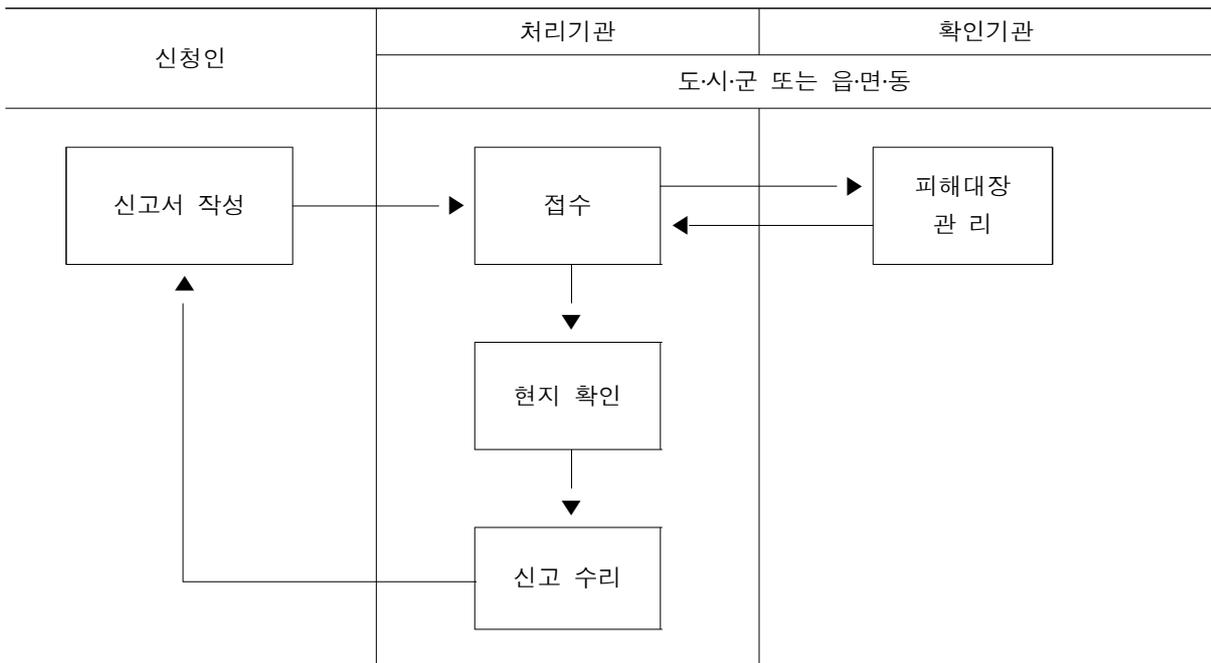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 (제20조제2항 관련)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 · 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13.7.1.] [충청북도조례 제3566호, 2013.6.28., 일부개정]

충청북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1>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도내 전 지역 또는 지역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기반재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청북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5.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함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소방본부장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①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5. 11, 2010. 6. 30, 2011. 12. 30, 2012. 12. 28, 2013. 6. 28>

1. 차 장 :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함.
 2. 총괄조정관 :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함.
 3.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기반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소방본부장 포함)이 되며, 차장 및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통제관을 보좌한다.
- ③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운영 한다. <개정 2007. 5. 11>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 별표 1
 2.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은 운영단계별로 국가 기반재난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편성·운영한다.
 3. 재난유형에 따른 사전대비단계에서는 실·국·본부대책반장을, 비상·대응단계 에서는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실무반을 운영한다.
- ④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종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5. 11, 2010. 6. 30, 2010. 12. 31>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2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7. 5. 11>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근무 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실·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1, 2010. 6. 30>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충청북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 ⑥그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 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에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계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 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 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 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충청북도기반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국가 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등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충청북도지사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국가기반재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기반보호총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체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충청북도안전관리계획의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안전부·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②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국가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566호, 2013.6.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2287호, 1996.10.18)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07. 5. 11 조례 제3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팀장”을 “지역안전팀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안전점검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별표 1] <개정 2013. 6. 28>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

본 부 장 : 도 지 사

차 장 :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 기획관리실장

통제관 : 소관업무실·국장

담당관: 소관업무담당실·과장

국·본부 대책반

상황관리반	종합상황반	홍보반	행정반	보건복지반	경제통상반	농정반	문화체육관광반	균형건설반	바이오환경반	구조구급반
기획관	상황실장	공보관	안전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소방본부장
1. 상황보고회의의 건의 자료 등 총괄 조정 2. 재해관련 긴급 예산 편성지원 3. 상황근무자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4. 방재 통신전산 시스템 가동 5. 기타 작살 분야에 관한 사항 6. 군정 등 유관 기관협조체제 7. 여성분야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 상황일지작성 및 피해상황 파악 등 2. 기상상황 등 예측 분석 3. 피해정보 관리·전파 4. 방송연문 홍보 및 TV 모니터링 5. 언론 인터뷰 경보 수집·분석 4. 긴급상황 관리 5. 재난 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진 6. 상황판단의의 계획 및 현장 상황관리관 지원팀 구성운영 7. 각 체계의 개시 및 해제 관한 사항 8. 이재민 수용 구호에 관한 사항	1. 재해상황 보도 2.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3. 보도자료 수집 배포 및 취재지원 4. 방송연문 홍보 및 TV 모니터링 5. 언론 인터뷰 전담 6. 그 밖에 대민 홍보와 관련 되는 사항	1. 재난복구 관련 인력 수요파악 및 동원출발 2. 민심동향 파악 및 안전대책 추진 3. 재난관련 세제 및 조달물자 확보지원 4. 공무원 동원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민방위대동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1. 복지분야 복구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수용 구호에 관한 사항 3.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구호에 관한 사항 4. 의료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 3.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6. 분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지 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 기업체 공업단지 응급 조치 및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시 일반금융 지원 3. 재해복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제 통상 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 농경분야 응급조치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2. 농축산 시설 복구 장비 자체 확보 지원 3. 재난지역 농축산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경 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2. 재난시 문화재의 안전보호 관리 3. 체육분야 응급 조치 및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 관광·건축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 지역개발분야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분야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 분야 응급 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4. 교량에 관한 사항 5. 재해복구 장비 동원 6.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7. 수송로 개설 및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설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 환경분야 복구에 관한 사항 2. 급수대책 관련 사항 3. 재해쓰레기 관리 4. 그 밖에 바이오·환경수질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 화재예방·진압에 관한 사항 2. 재난지역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관 감사관 여성정책관 예산담당관 창조전략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전총괄과 소방종합상황실 유관기관 과건자 (별도 인원)	공보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 안전과	경제정책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원예·유동·식품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항공과 건축문화과	균형개발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지수방재과 토지정보과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육성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대응구조구급과
사전대비단계: 3명 비상단계: 6명	사전대비단계: 4명 비상단계: 5명	사전대비단계: 1명 비상단계: 1명	사전대비단계: 3명 비상단계: 4명	사전대비단계: 2명 비상단계: 4명	사전대비단계: 2명 비상단계: 5명	사전대비단계: 4명 비상단계: 5명	사전대비단계: 3명 비상단계: 4명	사전대비단계: 4명 비상단계: 5명	사전대비단계: 2명 비상단계: 3명	사전대비단계: 1명 비상단계: 2명

<근무방법>

1. 국·본부 주무 과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29명, 비상단계 44명)
3. 실·국·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과건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전 결 권 자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 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지원 사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신망 운영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대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준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3] <개정 2007. 5. 11>

기반체계보호 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 장결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 관	담당 관
충청북도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비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충청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공 권 력 투 입 지 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통 합 지 원 중 합 대 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재난상황보고서(제23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 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리 번지
3. 상황 개요(기본현황)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 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 인명피해 :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복구계획)
 -
 -

관련 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8.6>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의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8.6><중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3.8.6>

③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8.6><중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22, 2013.8.6><제2항에서 이동, 중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3.8.6>

-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22, 2013.8.6><제3항에서 이동 2013.8.6>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2.2.22, 2013.8.6><제4항에서 이동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개정 2013.8.6>)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8.6>
 -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신설 2013.8.6><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6>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 ②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2.22>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2013.3.23>
-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46조(예보·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개정 2013.5.31>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2.7.]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비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 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3. 5. 10>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3조 관련)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1	무상급식 지원	30	40	
2	도 주관 통계조사	100		
3	도·시군 공동 통계조사	20	30	
4	도민정보화 진흥 사업	20	30	
5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 사업	정액		
6	예비군 육성	20	30	
7	거주외국인(새터민) 보호	30	40	
8	자원봉사센터 지원	20	30	
9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50		
10	민방위 교육	30	40	
11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0	30	
12	일자리창출 지원	20	30	
13	기업유치활동 지원	정액		
14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정액		
15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정액		
16	대중교통 육성 지원	20	30	
17	경관 조성사업	20	30	
18	지방도로 관리	100		
19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100		
20	재난예방 및 복구	30	40	
21	토지정보 확충 사업	20	30	
22	농촌 정주여건 개선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23	지역 특화사업 육성	20	30	
24	정예농업인 양성	20	30	
25	친환경 농업 육성	20	30	
26	식량작물 육성	20	30	
27	농업생산기반 조성	20	30	
28	농산물 수출진흥 사업	20	30	
29	지역특화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	30	
30	농산물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30	40	
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	30	
32	축산물 경쟁력강화 사업	20	30	
33	가축방역 사업	20	30	
34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20	30	
35	내수면어업 활성화	20	30	
36	산림자원 조성	20	30	
37	산림환경 보호	20	30	
38	일반 사회복지 지원 사업	30	40	
39	저소득층 지원 사업	30	40	
40	청소년 건전 육성	20	30	
41	보육서비스 지원	30	40	
42	건강가정 육성	20	30	
43	여성 권익증진 사업	20	30	
44	여성 인적자원 개발	20	30	
45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30	4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46	노인 복지 지원	30	40	
47	장애인 복지 지원	30	40	
48	인공면역 획득사업	20	30	
49	종교·문화원·향교 지원	20	30	
50	문화유산 보존 사업	30	40	
51	문화인프라구축 및 콘텐츠 육성	20	30	
52	문화시설 운영 지원	정액		
53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정액		
54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	20	30	
55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20	30	
56	시군 체육행사 지원	정액		
57	시군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제외
58	맑은물 공급사업	20	30	
59	소방시설 신·증축	30	40	용지매입비제외
6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정액		
61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정액		
62	아동급식 확대 지원(학기중)	정액		
63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0	30	
64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정액		
65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액		
66	누리과정 운영 지원	정액		
67	출산장려 사업	20	30	
68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20	30	
69	태양광산업 육성	정액		
70	산업자원 안전 관리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71	농업인 복지 증진	30	40	
72	지역특화작목 육성	30	40	
73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20	30	
74	산림경영 지원	20	30	
75	생태환경 산지 관리	20	30	
76	시군 문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제외
77	시군 축제 지원	정액		
78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정액		
79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0	30	
80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20	30	
81	대기환경 개선	20	30	
82	지역개발 촉진	20	30	
83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액		
8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정액		
85	한방바이오 R&D 강화	20	30	
86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	30	
87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20	30	
88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20	30	
89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	20	30	
90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어업경영·산림경영·가축사육·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4.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개정 2013.4.22>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구호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지원			
1) 응급 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 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이 전파(全破)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침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3) 생계 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 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 위 표 나목3)·4)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하여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林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가. 주택 복구			
1) 주택 파손·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0퍼센트 나) 용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주택 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반파 주택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p>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전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과 주택의 용자비용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p> <p>(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6) 주택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p> <p>(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로 한다.</p> <p>(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p>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6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재단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를 입었을 때에는 1 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물은 평균 심도(深度)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대파(代播)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1) 지원 50퍼센트 (2) 용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농경지의 유실·매물·침수 또는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물·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를 지원한다.
나) 농약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落果) 또는 가뭄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초지 유실·매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잠실(蠶室)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 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	복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郡道), 농어촌도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에 드는 금액	지방비 100퍼센트	
나)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70퍼센트 (2) 지방비 30퍼센트	
다) 사유림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용자 50퍼센트	
마) 사립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센트	

비고

1. 각 시설의 반과 시 지원기준은 전과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2. 각 시설의 반과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4.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 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